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60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윤준병・박민규・주철현

정동영 • 조계원 • 박홍배

이원택 • 박희승 • 이춘석

김우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·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,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 연장되어 왔으나, 2025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2023년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폐업률은 9.5%로 전년 대비 0.8%p 상승하고, 전체 사업자 중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년 12·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그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음.

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,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계속 유도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2).

법률 제 호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8조의2 중 "2025년"을 "2030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의2(규제의 존속기한) 제2	제48조의2(규제의 존속기한)
조제4호, 제8조제1항ㆍ제2항 중	
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,	
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	
의3은 <u>2025년</u> 11월 23일까지	<u>2030년</u>
그 효력을 가진다.	